

등록번호	주민복지과-15722
등록일자	2026. 4. 30.
결재일자	2026. 4. 30.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복지조사계장	주민복지과장	행정복지국장	합천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배유미	이명희	기타	정철수	대결 2026. 4. 30. 장재혁
협조자	복지정책계장 김경희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계획(안)

요 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7. 1. ~ 2027. 6. 30.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가구 2,378가구(2026년 4월기준)
※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
- 소요예산 : 30,000천원
- 대상시설 :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전월세, 무료임대 가능, 마등기주택 제외)



합 천 군
[주민복지과]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계획[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노후주택 거주 및 화재위험에 취약하여 화재 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합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II 화재보험 수혜가구 현황

가 입 기 간	가입 가구수	지원 가구수	보험 수령액(원)	비고
계	22,011	25	222,186,820	
2011.07.01 ~ 2012.06.30	1,643	1	11,046,061	
2012.07.01 ~ 2013.06.30	1,551	4	36,331,708	
2013.07.01 ~ 2014.06.30	1,475	1	2,336,280	
2014.07.01. ~ 2015.06.30	1,385	1	3,680,215	
2015.07.01. ~ 2016.06.30	1,269	1	2,341,337	
2016.07.01. ~ 2017.06.30	1,350	4	27,101,215	
2017.07.01. ~ 2018.06.30	1,299	-	-	
2018.07.01. ~ 2019.06.30	1,280	1	14,242,765	
2019.07.01. ~ 2020.06.30	1,404	2	21,478,060	
2020.07.01. ~ 2021.06.30.	1,481	4	23,856,802	
2021.07.01. ~ 2022.06.30.	1,491	2	42,940,000	
2022.07.01. ~ 2023.06.30.	1,624	1	26,305,152	
2023.07.01. ~ 2024.06.30.	1,762	-	-	
2024.07.01. ~ 2025.06.30.	1,656	2	7,889,905	
2025.07.01. ~ 현재까지	1,341	1	2,637,320	3건 처리 중

II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7. 1. ~ 2027. 6. 30.(1년간)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가구 2,378가구(2026년 4월기준)
 - ※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
- 대상시설 :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전월세, 무료임대 가능, 미등기주택 제외)
- 보장형태 : 순수보장형(1년단위 소멸)
- 보장금액 : 30,000천원(건물 20,000천원, 가재도구 10,000천원)

IV

세부추진계획

-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읍·면 계획 송부 : 2026. 4. 30.(목) 한
- 대상가구 선정 조사 : 2025. 5. 8.(금) 한
- 조사방법
 -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와 건물지번이 다를 경우, 실제 건물지번 작성
 - 보험가입 주소와 화재 소재지가 다를 경우 보장 불가
- 보험 가입대상자 명단 취합 및 검토 : 2026. 5. 28.(목) 한
- 보험료 산정 의뢰 : 2026. 5. 29.(금) 한
- 계약 및 보험료 입금 : 2026. 6. 12.(금) 한

V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0,000천원(균비 100%)
 - 전액 보험료로 집행

○ 각 읍·면 협조사항

- 화재안심보험 가입대상자 명단(붙임1) 및 개인정보 등 제공동의서(붙임2) 제출
- 제출서류에 따라 보험 보장 내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부상 자료 및 실제 거주지 확인 후 제출 요망

【참고사항】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정
6.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군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1. 명절(설·추석에 한한다), 연말 위문금품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지원
3.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지원
6.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7.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8.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문금품의 지원 수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1. 국고 또는 도비 지원금품

2. 군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군에 배부된 금액 또는 물품